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3. 31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4. 6

다. 상 정 일 자 : 2005. 4. 15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농산과장 안상순

나. 제안사유

- 화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내실 있는 화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 운영의 효율화(안 제7조)
 - 급식지원방법 및 기준 등을 급식 관련자를 심의위원 추가로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석호)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학교급식비 지원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 학교급식지원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수를 당초 12인 이내에서 14인 이내로 확대 구성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심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사료되며,
- 아울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

행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 토론자 : 문팔갑 위원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 제2항 2호의 “화순교육청 관계관 1인”을 “화순교육청 관련과장 1인”으로 수정요구

6. 심사결과

“수정 의결”

7. 불 입 :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5. 4. 15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

1. 수정이유

- 「관계관」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관련과장」으로 명기함으로써 책임의식 고양은 물론 업무추진 등의 효율성 제고

2. 수정 주요골자

-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 제2항 2호의 “화순교육청 관계관 1인”을 “화순교육청 관련과장 1인”으로 수정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2호의 “화순교육청 관계관 1인”을 “화순교육청 관련과장 1인”으로 한다.